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신용하, 이지연, 추은희 의원(3인)

다. 찬 성 자: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춘남, 소진혁, 양진오,
이명희, 이정희, 장미경, 정지원 의원(14인)

라. 회부일자: 2026년 1월 6일

마. 상정일자: 2026년 1월 14일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신 용 하 의원

나.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존 조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현 시점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더 확고히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책임감있게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안 제1조~제4조)
-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기업관련단체 지원 등(안 제5조~제9조)
- 기업사랑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안 제10조~제13조)
- 기업 및 근로자 예우·지원 등(안 제14조~제17조)
- 위탁, 협력 체계 구축, 포상(안 제18조~제20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6. 1. 6. ~ 1. 12.) 결과 의견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관내 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현 시점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안 제6조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기업사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다만 위원회 운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 1회씩 서면으로만 개최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위원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에서는 기업애로상담관제를 통해 전문가에게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사항, 기업경영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에서는 구미시최고기업인상과 구미시최고 근로자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 관련 단체, 구미시 기업사랑위원회, 기업애로상담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락

5. 토 론 요 지: 생 락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